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97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¹⁾를 1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된다.</u>

-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에 기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서효원,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형사소송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2016. 12), 3쪽]

점 등을 근거로 범인이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있고,²⁾ 검사의 소추권 행사·소추의무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보다 확실하게 행사·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³⁾

○ 현행법은 피해자의 나이, 신체장애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 제도를 두고 있고⁴⁾, 현행법 제21조제4항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상을 ‘강간 등 살인죄’ 등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가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

2) 헌법재판소 1995. 7. 21. 95헌마8, 9, 16, 17(병합) 결정

3) 강동범,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8호(2018. 3), 314쪽

4)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注: 강간등 살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注: 강간등 살인)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⁵⁾

- 우선,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취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피해를 수인하라는 친족의 압력 등 친족관계의 특수성에 기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들이 검사의 소추권 행사·소추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친족관계의 특수성에 기하여 형사소추 등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와 단순히 친족관계만이 존재할 뿐 친족관계가 형사소추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나이 등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친족관계의 존부라는 단일 요소에 기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

5)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함[헌법재판소 1995. 7. 21. 95헌마8 등 결정].